



제335회 제1차 정례회
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
2022. 10. 6 (목)

2022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71
제출일자	2022. 09. 23.
회부일자	2022. 09. 28.

행정보건복지위원회
전 문 위 원 실

2023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경상북도지사

2. 제안 이유

2023 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」에 따라 미리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□ 사업내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소관부서	대상기관	사 업 명	출연 예정액
계		2개 기관	2개 사업	5,530,000
1	아이세상 지 원 과	(재) 경 상 북 도 청소년육성재단	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지원	2,644,000
2	여성가족 행 복 과	(재) 경 상 북 도 여성정책개발원	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운영 지원	2,886,000

가. (재)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 : 2,644,000천원(도비)

- 도 청소년육성재단 사무처 운영지원 : 632,000천원(도비)
 - 청소년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단 사무처의 운영 경비 지원
- 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 : 2,012,000천원(도비)
 - 프로그램 개발·운영, 인건비 등 도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 도모
 - 도내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

나. (재)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

-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운영지원 : 2,886,000천원(도비)
 - 지역여성의 장기발전 방안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
 -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

□ 출연금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기관명		편성항목	편성액	세부내역
(재)경상북도 청소년 육성재단	사무처	계	632,000	
		인건비	446,679	▪ 일반직(4명)
		운영비	185,321	▪ 일반운영비, 행사운영비 등
	청소년 수련원	계	2,012,000	
		인건비	1,705,798	▪ 일반직(19명), 공무원(7명)
		운영비	306,202	▪ 일반운영비 등
(재)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		계	2,886,000	
		인건비	1,692,458	▪ 원장, 일반직(14명), 연구직(11명), 공무원(32명), 기간제(17명)
		운영비	816,542	▪ 공공요금, 시설관리 용역비, 수선유지비 등
		사업비	377,000	▪ 조사연구 사업비 등

□ 연도별 출연 현황(최근 5년간)

(단위 : 천원)

출연기관	'19	'20	'21	'22	'23출연 요구액	증감액 (전년대비)
(재)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 (사무처)	210,000	270,000	430,000	480,000	632,000	152,000
(재)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 (청소년수련원)	1,670,000	1,850,000	1,520,000	2,134,000	2,012,000	△122,000
(재)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	1,357,000	2,197,000	2,180,000	2,317,800	2,886,000	568,200

4. 근거법령(별첨 참조)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, 제20조 제1항
- 「민법」 제32조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「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조례」 제5조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5조, 제11조
- 「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2조, 제13조, 제16조

5. 검토의견

□ 2023년도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근거는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,
- 위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.
- 이는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은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,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·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·낭비성 출자·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.
- 또한 본 동의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등을 살펴보고,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.

□ 먼저, (재)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출연을 살펴보면

- (재)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¹⁾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 및 「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 5월에 설립 허가된 재단법인으로서,

1) ①설립허가 : 2002. 5. 1 ②법인명칭변경 : 2007. 12(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)

③도 출연금(기본재산)/비율 : 300백만원/100%

④주요기능 :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, 청소년보호활동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등
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5조 제3항, 「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6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.
- (재)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출연안 주요 증액사유는
 - 먼저, 사무처 운영지원의 경우는 종사자 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등 복리후생비,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였고,
 -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의 경우는 종사자 인건비, 수련원 행정 운영비 등 기본 경상경비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□ 다음으로, (재)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출연에 대하여 살펴보면

- (재)여성정책개발원²⁾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 9월에 설립 허가된 재단법인으로서, 「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.
- (재)여성정책개발원 출연사업의 주요내용은 직원 인건비, 운영비, 자산취득비 등을 지원하는 경비로서, 내년도 출연금은 28억 8,600만원입니다.

2) ①설립허가 : 1997.9.12 ②도 출연금(기본재산) : 571백만원

③주요기능 : 지역여성 관련 조사·연구, 지역여성발전을 위한 장기발전구상·시책개발 등

④인력 : 현원 53명(정원 57명)

□ 종합검토 의견

- (재)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은 도내 유일한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교육기관이며, (재)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은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다만 도비로 운영하는 출연기관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조직 운영에 필요·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, 지원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됨과 동시에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·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, 출연규모의 경우 출연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해져 제시되고 있는데, 상세 출연금 내역에 대한 부분은 소관 실국과 사전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끝으로 기관별 출연금액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본예산 심사 시 검토되고 출연금도 이때 최종 확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<별첨>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학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□ 민법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
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·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, 학술, 자선(慈善)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(이하 “공익법인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14.]

□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조례

제5조(출연금)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4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□ 청소년기본법

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4.3.24.]

□ 청소년활동 진흥법

제5조(청소년활동의 지원)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4.1.21.]

제11조(수련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③ 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, 건축 연 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(이하 “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4.1.21.]

□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

제12조(위탁운영) 도지사는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제3항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'15.12.31.>

제13조(재단법인) ①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② 법인에 임원, 이사회, 사무기구, 직원을 두며,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법인의 정관에 따른다. <개정 '15.12.31.>

제16조(운영지원) ① 법인의 운영경비는 청소년시설 운영수익금과 정부 및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<신설 '15.12.31.>